



보도자료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확립 경제민주화·창조경제 구현

2015년 5월 11일(월) 배포

2015년 5월 12일(화) 조긴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5월 11일(월) 낮 12시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담당과장: 민혜영(044-200-4450)

담당: 김준희 사무관 심지영 조사관(044-200-4460)

9개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자동차 시설 대여 불공정 약관 시정

리스 차량의 취득세·등록세를 이용자에게 전기하는 조항 등 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9개 여신 전문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자동차 시설 대여(이하 리스)약관 중 리스 차량의 취·등록세 전가 조항, 차량 인수증에 하자를 기재하지 않으며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 주하는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함.
 - * 현대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삼성카드, 하나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

Ⅰ │ 조사 배경

- □ 자동차 리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리스 계약에 관한 정보 부족 등에 따라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는 추세**임.
 - * 자동차 리스 취급액 현황(여신금융협회) (2009년 4조 1,172억 원 → 2011년 6조 1,804억 원 → 2013년 6조 4,171억 원)
 - ** 자동차 리스 관련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건수(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0년 304건 → 2011년 457건 → 2012년 525건 → 2013년 9월말 607건)
- □ 자동차 리스 이용 분야의 계약 관행을 개선하여 리스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번 실태조사를 추진함.

주요 시정 내용

1. 리스 차량의 취득세·등록세를 리스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 9개 사업자 모두 해당

- □ (시정 전) 리스 차량의 취득세·등록세를 리스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함.
- □ (시정 후) 리스 차량의 취득세·등록세를 리스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함.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또한 고객명의로 등록할지라도 **취득세는** 금융회사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를 지연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취 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터 하기로 합니다.

자동차등록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 제비 용은 금융회사가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 만. 고객의 고의 · 과실로 인한 사유로 취득 세가 축소ㆍ지연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 하기로 합니다. 또한 고객 명의로 등록할지 라도 취득세는 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명의 로 **납부**하여야 하며, 고객의 고의·과실로 인해 취득세가 지연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 는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등록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 로 합니다.

자동차의 구입, 인도, 등록, 유지, 사용, 자동차의 구입, 인도, 유지, 사용, 등록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 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등록' 문구 삭제)

□ (시정 사유)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면 리스 자동차의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등록 명의를 불문하고 리스 자동차에 대한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취득하는 리스 회사이고, 등록세 납세 의무자는 리스 자동차에 대한 소유 명의자로 등록되는 리스 회사임.

-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③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등록면허세를</u> 납부할 의무를 진다.

- 1. 등록을 하는 자
- 따라서 리스 회사에 부과된 취득세 · 등록세의 납세 부담을 리스 이용자에게 곧바로 전가하는 조항은 지방세법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불공정한 조항임.

2. 자동차 인수증 발급 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 ※ 4개 사업자 해당(현대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신한카드)
- □ (시정 전) 자동차 인수증 발급 시 차량이 인수된 것으로 **간주**하여 실제로 리스 차량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리스 기간이 개시되도록 함.
- □ (시정 후) 자동차 인수증 발급 시 차량이 인수된 것으로 추정하여 리스 기간 개시 시점을 둘러싼 고객의 항변권을 보장함.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u>이로써 자동차를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u>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이로써 <u>자동차를 인수한 것으로 추정</u> 합니다.

□ (시정 사유) 상법 제168조의3 제3항은 금융 리스 물건 수령증을 발급한 경우 금융 리스 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 리스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법에서 특별히 추정*적 효력을 부여한 취지는 리스 이용자가 자동차 인수증을 이미 교부하였더라도 실제로 리스 차량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사실을 주장하여 리스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리스 기간 개시 시점을 둘러싼 고객의 항변권을 보장하기 위함임.
- 해당 조항은 추정적 효력을 부여하여 반증에 의한 번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법률 관계를 간주**로 대치하여 고객의 항변권을 제한함.
- * '추정'이란 불명확한 시실을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되, 추후 반대시실의 증거가 있을 때에는 그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법적 제도로서, 추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반대 시실의 증거를 제시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음.
- ** '간주'란 일종의 법의 의제로서 사실의 진실여부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사실을 기정사실로 확정함으로써 그에 대해 일정한 법적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대사실의 증거 만으로는 그 효과가 번복되지 않음.

3. 리스 기간 개시 시점을 리스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정한 조항

- ※ 3개 사업자 해당(삼성카드,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
- □ (시정 전) 리스 차량을 실제로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리스 기간의 기산점을 보험 가입일 또는 매매 대금 지급일로 규정함.
- □ (시정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리스 이용자가 리스 물건을 수령한 날 또는 리스 회사에 자동차 인수증을 발급한 날을 리스 기간의 기산점으로 함.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리스기간은 별표(4)란 기재에 의하고, 이
는 갑이 차량수령증을 발급한 날(이하
"리스실행일"이라 한다)로부터 기산한다.
단 차량등록업무로 인하여 차량인도 및
차량수령증 교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일을 "리스실행일"로 하며,(삭 제)* 갑:고객,을:금융회사

- □ (시정 사유) 자동차 리스 계약 체결 후 리스 이용자에게 리스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인 리스 기간의 개시 시점은 리스 이용자가 리스 차량을 수령한 날 또는 리스 회사에 자동차 인수증을 발급한 날임.
 - ㅇ 리스 물건을 실제로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리스 기간의 개시 시점을 보험 가입일 또는 매매 대금 지급일로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임.

4. 자동차 인수증에 하자 미기재 시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 2개 사업자 해당(롯데캐피탈, 신한카드)

- □ (시정 전) 자동차 인수증 발급 시 하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여 인수증 발급 당시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하여 추후 공급자에게 하자 담보 책임 등을 묻기 어려움.
- □ (시정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인수증 발급 당시 발견하지 못한 하지를 추후에 발견하게 되는 경우 차량의 하자에 관한 항변권 행사를 쉽게 함.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을은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기타사항 을은 전항에 따라 차량수령증을 교부한 경우 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차량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리스료 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통보하고 차량 수령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을이 그러한 하자를 차량수령증에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 으로 간주한다.

* 갑 : 금융회사, 을 : 고객

급 및 기타 이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갑이 사전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 갑은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을에게 리스료를 청구할 수 없다. (2문 삭제)

- □ (시정 사유) 리스 차량의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리스 회사는 리스 이용 자가 공급자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추급하는 등 적절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상법 제168조의 4)
 - ㅇ 물건 수령증을 발급할 때 하지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 으로 가주하게 되면 수령증 발급 당시 발견하지 못한 하지를 추후에 발견하게 되 더라도 리스회사의 협력을 받지 못하여 공급자에게 하자 담보 책임 등을 묻기 어려움.

5. 리스 보증금의 담보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한 조항

- **※ 1개 사업자** 해당(삼성카드)
- □ (시정 전) 리스 보증금을 리스 계약뿐만 아니라 리스 이용자의 리스 회사에 대한 현재·장래의 모든 금전 채권과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 (시정 후) 리스 보증금을 리스 계약과 관련하여 리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만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함.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제2조에 따른 리스기간이 종료하거나 제 제2조에 따른 리스기간이 종료하거나 제 20조에서 따라 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리스보증금을 이 계약을 포함하여 리스회사의 리스이용자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금전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 며, 그 잔여금액은 갑에게 반환한다.

* 갑: 고객, 을: 금융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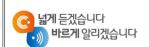
20조에서 따라 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리스보증금을 갑이 연체한 리스료를 포함하여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 **할 수 있으며.** 그 잔여금액은 갑에게 반환한다.

- □ (시정 사유) 리스 보증금에서 리스 계약과 관련한 리스 이용자의 피담보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원은 리스 이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함.
 - 리스 보증금을 리스 계약 뿐만 아니라 리스 이용자의 리스 회사에 대한 현재·장래의 모든 금전 채권과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담보 채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리스 이용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함.

3 기대 효과·계획

- □ 이번 조사 대상 여신 전문 금융회사들은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라 개정 약관을 이달 초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승인 즉시 개정 약관을 사용할 예정임.
 -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자동차 리스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리스 이용자와 리스 회사 간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 으로 기대됨.
- □ 앞으로 공정위는 자동차 리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 할 계획**임.
- ※ <별첨>: 1. 자동차 리스 계약 구조
 - 2. 사업자별 약관 조항 시정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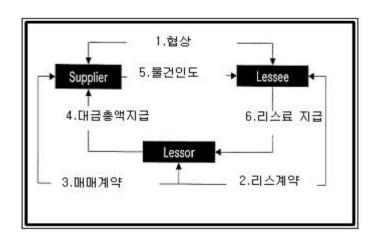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별첨 1〉

자동차 리스 계약 구조



- ① 리스이용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의 제조자 기타 공급자와 상담을 하여 목적물·가격·인도시기 등 실질적인 합의를 함.
- ② 리스이용자가 ①에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리스회사와 그 물건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함.
- ③ ②의 리스계약의 이행으로서 리스회사가 미리 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의 합의내용에 따라 공급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함. 이 때 예외 없이 공급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물건을 이행하기로 합의함.
- ④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을 인도하고, 이용자가 물건을 검사한 후물품수령증(차량인수증)을 리스회사에 교부함.
- ⑤ 리스회사는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함.
- ⑥ 이용자에게 리스회사에 정기적으로 리스료를 지급함.

〈별첨 2〉

사업자별 약관조항 시정 내용

- 1. 리스차량의 취득세·등록세를 리스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 * 현대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삼성카드, 하나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9개 사업자**)

	수정 전	수정 후
현 대 캐 <u></u> 탈	제7조 ④ (전단 생략) 또한 고객명의로 등록할지라도 취득세는 금융회사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7조 ④ (전단 생략) <u>자동차등록에 소요되는</u> 취득세 등 제비용은 금융회사가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유로 취득세가 축소·지연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또한 <u>고객 명의로 등록할지라도 취득세는 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명의로 납부</u> 하여야 하며, 고객의고의·과실로 인해 취득세가 지연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12조 ④ 자동차의 구입, 인도, <u>등록</u> , 유지, 사용, 등록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 여 <u>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u> 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 함)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
비에더블유	제7조(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④ (전단 생략) 또한 고객명의로 등록할 지라도 취득세는 금융회사의 명의 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 납부 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추가 제세 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 기로 합니다.	⑤ ③항에 따라 <u>등록에 소요되는 등록</u> 세, 취득세 등 제비용은 금융회사의

	수정 전	수정 후
	제12조(자동차의 유지비용 및 제세공과금) ④ 자동차의 구입, 인도, 등록, 유지, 사용 및 등록 말소, 폐차 등과 <u>관련</u> 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한다.	, and the second
신한캐피탈	제7조(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④ (전단 생략)또한 고객명의로 등록할지라도 취득세는 금융회사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인한 사유로 취득세가 축소·지연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제세 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 하기로 합니다. 또한 고객 명의로 등록할지라도 취득세는 금융회사 가 금융회사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고객의 고의·과실로 인해 취 득세가 지연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 는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12조 (지동차의 유지비용 및 제세공과금) ④ 자동차의 구입, 인도, 등록, 유지, 사용, 등록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삼 성 카 드	제13조(차량의 등록 및 소유권) ③ <u>감은 차량의 등록을 갑의 명의로 당</u> 록할지라도 취득세는 을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을의 명의로 납부하지 않아 이후 을에게 고지되는 취득세 및 가산세는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 갑 : 고객, 을 : 금융회사	제13조(차량의 등록 및 소유권) ③ <u>자동차등록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 제비용은 삼성카드(주)가 납부</u> 하기로 한다. 다만, 리스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유로 취득세가 축소·지연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리스이용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또한 <u>리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지라도 취득세는 삼성카드(주)가 삼성카드(주)의 명의로 납부</u> 하여야 하며, 리스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취득세가 지연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리스이용자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수정 전	수정 후
하 나 캐 피 탈	제13조(차량의 등록 및 소유권) ④ <u>갑은 차량의 등록을 갑의 명의로 날 할지라도 취득세는 을의 명의로 납</u> 부하여야 하며, 만약 을의 명의로 납부하지 않아 고지되는 취득세 및 가산금은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차량의 등록 및 소유권) ① 등록에 소요되는 등록세, 취득세 등 제비용을 을의 비용으로 합니다. ④ 갑은 차량의 등록을 갑의 명의로 할지 라도 취득세는 을이 부담하기로 하며, 만약 갑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유로 고지되는 취득세 및 가산금은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비 엔 케 이 캐 피 탈	제11조(자동차의 유지비용 및 제세공과금) ④ 자동차의 구입, 인도, 등록, 유지, 사용 및 등록 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 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한다.	제11조(자동차의 유지비용 및 제세공과금) ④ 자동차의 구입, 인도, 유지, 사용 및 등록 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등록'문구 삭제)
롯 데 캐 피 탈	제6조 【차량의 구입, 인도 및 등록】 ⑧ 차량의 구입, 인도, 등록, 유지 및 등록말소, 폐차 등과 관련되어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갑이 이 러한 추가비용을 부담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이부담한다. * 갑 : 금융회사, 을 : 고객	제6조 【차량의 구입, 인도 및 등록】 ⑧ 차량의 구입, 인도, 유지 및 등록말소, 폐차 등 과 관련되어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추기적으로 발생할 경우, 갑이 이러한 추 가비용을 부담한다는 의사를 명사적으로 표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이 부담한다. ('등록' 문구 삭제)
메르세	[제4조] 차량의 구입, 인수 및 등록 7. 또한 <u>갑의 명의로 등록할지라도 취득세</u> 는 을의 명의로 납부해야 하며, 이를 지연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다. 단, 고객이 리스료 절감을 위해
데스벤츠	[제11조] 리스치량의 유지, 비용 및 제세공과금 4. 리스차량의 구입, 인도, 등록, 유지, 사용 및 등록 말소, 폐차 등과 관 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 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 함)은 갑이 부담한다. * 갑: 고객, 을: 금융회사	[제11조 리스차량의 유지, 비용 및 제세공과금 4. 리스차량의 구입, 인도, 유지, 사용 및 등록 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 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 금(과태료, 범칙금 포함)은 갑이 부담 한다. ('등록' 문구 삭제)

	수정 전	수정 후
신		세가 지연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한 카 드	[제10조] 차량의 유지, 비용 및 제세공과금 4. 차량의 구입, 인도, 등록, 유지, 사용 및 등록 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갑"이 부담한다. * 갑:고객,을:금융회사	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

2. 자동차인수증 발급 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 현대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신한카드 (4개 사업자)

	수정 전	수정 후
현 대 캐 피 탈	제 5조(리스기간) ②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 5조(리스기간) ②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비 엠 더 블 유	제5조(리스기간) ②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리스기간) ②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신 한 캐 피 탈	제5조(리스기간) ②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 급한 경우 이로써 <u>자동차를 인도한 것으</u> 로 봅니다.	제5조(리스기간) ②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이로써 <u>자동차를 인도한 것으로 추정</u> 합니다.
신 한 카 드	제3조(리스기간) 1. "갑"이 본 계약서에 따라 차량을 리스받아 사용하는 기간(이하 "리스기간"이라 함)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리스실행일은 "갑"이 "을"에게 인수증을 교부하고 "을"이 차량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로 간주한다. * 갑:고객,을:금융회사	제3조(리스기간) 1. 리스기간은 고객이 이 약정서에 따라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는 기간(이하 "리스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며, 리스실행일은 고객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 합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3. 리스기간 개시시점을 리스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정한 조항

* 삼성카드,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 (3개 사업자)

	· 점앙기그, 메르세네드렌스파이렌글시미드고디어, 덴션기그 (J/) 사업자/		
	수정 전	수정 후	
삼 성 카 드		기산한다. 단 차량등록업무로 인하여 차 량인도 및 차량수령증 교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일을 "리스실행일"로 하며, 다른 사유로 인하여 리스기간 도중 에 이 계약이 종료, 해제·해지되는 경우의	
메 르 세 데 스 벤 츠	[제3조] 리스기간 1. (1문 생략) 리스 실행일은 갑이 을에게 차량인수증을 교부하고 을이 차량 매도 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로 추정한다. 인수증교부일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대금 지급일을 실행일로 본다. * 갑:고객,을:금융회사	[제3조] 리스기간 1. (1문 생략)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 증을 발급한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도한 것으로 <u>추정합니다</u> . (3문 삭제)	
신 한 카 드	[제3조] 리스기간 1. "갑"이 본 계약서에 따라 차량을 리스 받 아 사용하는 기간(이하 '리스기간'이라 함)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리스실행일은 "갑"이 "을"에게 인수증을 교부하고 "을"이 차량 매도인에게 매 매대금을 지급한 날로 간주한다. 인수증 교부일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대금 지급 일을 실행일로 본다. * 갑 : 고객, 을 : 금융회사	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는 기간(이하	

4. 물건수령증에 하자 미기재시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 롯데캐피탈, 신한카드 (2개 사업자)

	수정 전	수정 후
롯 데 캐 피 탈	제6조 【차량의 구입, 인도 및 등록】 ③ 을은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기타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통보하고 차량수령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을이 그러한 하자를 차량수령증에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 갑 : 금융회사, 을 : 고객	제6조 【차량의 구입, 인도 및 등록】 ③ 을은 전항에 따라 차량수령증을 교부한 경우 차량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리스료 지급 및 기타 이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갑이 사전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 갑은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을에게 리스료를 청구할수 없다. (2문 삭제)
신 한 카 드	[제4조] 차량의 구입·인도·등록 3. "갑"이 차량의 종류, 구격, 기능, 성능 그 외의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을"에게 통지하고 차량인수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갑"이 그러 한 하자를 차량 인수증에 기재하지 않 을 때에는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 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 갑 : 고객, 을 : 금융회사	[제4조] 차량의 구입·인도·등록 3. 고객은 자동차 인수시 대리인을 선정할수 있으며, 고객 또는 고객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은 즉시 자동차에 대한 하자유무를 검사하고 금융회사에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하기로 합니다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리스물건의 부존재를이유로 리스료 지급의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2문 삭제)

5. 리스보증금의 담보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한 조항

* 삼성카드 **(1개 사업자)**

	수정 전	수정 후
	제4조(리스보증금)	제4조(리스보증금)
	② 제2조에 따른 리스기간이 종료하거	② 제2조에 따른 리스기간이 종료하거
	나 제20조에 따라 리스계약이 해지	나 제20조에 따라 리스계약이 해지
 삼	된 경우 <u>을은 리스보증금을 이 계약</u>	된 경우 <u>삼성카드(주)는 리스보증</u>
_ ㅁ 성	<u>을 포함하여 리스회사의 리스이용자</u>	금을 리스이용자가 연체한 리스료를
카	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금전	포함하여 이 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이용
트	채권과 상계 할 수 있으며, 그 잔여금	자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전부 또는
	액은 갑에게 반환한다.	<u>일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u> 그
		잔여금액은 갑에게 반환한다.
	* 갑 : 고객, 을 : 금융회사	